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
-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 후생 증진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되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판촉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심주섭 (044-202-6650)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우 (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심아미 (02-2110-1530)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양해웅 (02-2110-1533)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단통법 폐지 전

1. 단말기 지원금 규제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금지



폐지

2.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할인



유지

3. 이용자 권익 보호

이용자 정보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유지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
구입부담 경감**

선택약정
요금할인 유지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